*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
**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,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/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/중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.

▶ 총보수비용 비율

마이다스 베스트트리오 증권 투자신탁(주식) (단위 : 연환산, %)

구분	해당 집합투자기구		상위펀드 비용 합산	
	총보수,비용비율	매매,중개수수료 비율	합성 총보수,비용비율	매매,중개수수료 비율
전기	0.00	0.50	0.00	0.50
당기	0.00	0.64	0.00	0.64

마이다스베스트트리오증권투자신탁(주식)A1 (단위 : 연환산, %)

구분	해당 집합투자기구		상위펀드 비용 합산	
	총보수,비용비율	매매,중개수수료 비율	합성 총보수,비용비율	매매,중개수수료 비율
전기	1.70	0.00	1.70	0.50
당기	1.70	0.00	1.71	0.63

마이다스베스트트리오증권투자신탁(주식)C1 (단위 : 연환산, %)

구분	해당 집합투자기구		상위펀드 비용 합산	
	총보수,비용비율	매매,중개수수료 비율	합성 총보수,비용비율	매매,중개수수료 비율
전기	0.00	0.00	0.00	0.00
당기	0.22	0.00	0.22	0.30

주1) 총보수·비용비율(Total Expense Ratio) 이란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서 부담하는 '보수'와 '기타비용'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 (보수,비용 차감전 기준)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,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.
주2) 매매/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/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(보수,비용 차감전 기준)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/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.

6. 투자자산매매내역

▶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

마이다스 베스트트리오 증권 투자신탁(주식) (단위 : 주,원,%)

매수		매도		매매회전율	
수량	금액	수량	금액	3개월	연환산
1,864,543	84,177,643,000	1,941,760	57,203,831,490	38.94	156.20

※ 매매회전율이란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.

공지사항

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마이다스 베스트트리오 증권 투자신탁(주식)의 집합투자업자인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이 작성하여 신탁업자인 '한국씨티은행'의 확인을 받아 투자매매,중개업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. 다만 일괄 예탁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.
각종 보고서 확인 :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http://www.midasasset.co.kr / 02-3787-3500
금융투자협회 http://dis.fundservice.net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㈜ 한국씨티은행
문의가능 전화번호 : (02) 3455-2504 / 3455-2567

1.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마이다스베스트트리오 증권투자신탁 (주식)
(종류 A1, 종류 C1, 종류 C-I)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(주식형), 신탁형, 공모형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
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09.01.26 - 2010.01.25
라. 집합투자업자: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(주)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한국씨티은행, 하이투자증권, 대신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- 2009.04.24 약관(규약) 전면 개정 :

1)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
2)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:
마이다스베스트트리오 주식투자신탁 →
마이다스베스트트리오 증권투자신탁 (주식)

- 2009.12.24 규약 변경 : 종류형 C-I 내용 신설

조항	변경전	변경후
제 3 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신설	3. C-I 클래스 수익증권: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,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각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.
제 10 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신설	3. C-I 클래스 수익증권
제 39 조(보수)	신설	3. C-I 클래스 수익증권 가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5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 다,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
제 40 조 (판매수수료)	신설	3. C-I 클래스 수익증권: 부과하지 않음
제 41 조 (환매수수료)	신설	3. C-I 클래스 수익증권: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 사항 없음.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.

5.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.

6.회계감사인의 선임 • 해임에 관한 사항

선임일	회계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(원)	계약 방법
2007.09.19	선진회계법인	1 년	2,420,000	서면

* 회계감사인 선임비용은 1년에 한번 회계감사 수행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임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□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-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합니다.

□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적정하게 작성 되었습니다.

□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본 집합투자기구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.

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.

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-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습니다.

□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- 해당 사항 없습니다.

□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1항 제1호 (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・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감시의무 면제)에 해당되어 본 항목은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닙니다.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, 투자원리금에 손실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.

-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(www.midasasset.com) 및 금융투자협회 (www.kofia.or.kr)의 홈페이지를 이용 할 경우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